

제 3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로 나타내어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신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 4)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으로 하고 대여제품일 경우 수급자사망시,시설입소시 전 까지이고 전동,수동침대는 병원입원시에도 대여가 중지됨을 알려준다.
판매제품은 각 품목별로 내구연간과 사용할수 있는 수량에 관해 설명을 해준다.

계약목적은 수급자와 공급자의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수 있게 계약을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공급자는 수급자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를 알수 있고, 수급자는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받고 전반적인 의무(본인부담금 지불)를 다 하였는지를 규정에 목적이 있다.

월이용료는 연 한도액(160만원)과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다.
수급자별로 부담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이용료에 대한 공지를 설명해준다.

비용부담액은 수급자가 구매한 금액에 15%, 감경대상자는 9%,6% ,기초생활수급자는 6%와 0% 두종류가 있고 각각의 정해진 대로 부담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수급자를 대신해서 계약체결를 해야할 권리와 의무 또 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있음을 포함한 내용을 설명해준다.

권리:

- 1.수급자를 대신해서 계약체결시 서비스 받기로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수급자의 환경사정과 건강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대여제품에 한해서 계약해지는 대상자가 대여제품 종료를 원했을때,요양원입소,

사망 하였을 때)

- 3.수급자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수급자가 복지용품 신청이 신청서부터 설치완료 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알 권리.
- 5.대여제품 사용시 제품에 하자는 없지만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교체를 원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1.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병적상태에 따라 병원입원,시설입소 시에는 센터에 통보해 줘야할 의무.
- 2.제품구입시 본인부담금과 대여제품 사용시 월비용 부담에 관해 꼭 지불해야할 의무
- 3.수급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센터에 통보해 줘야 할 의무

<단 수급자가 구매한 복지용구를 쓰시다가 발생한 고장이나 망가짐을 평계로 계약 체결을 해지 할 수는 없다 .그때는 제품의 A/S 신청을 하여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